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

<2021. 01. 06>

I 추진 목적

- 산재노동자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수리료 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시범 포함) 반영

II 관련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산재보험 시범 재활수가기준(고용노동부장관 승인)

III 개선 의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 수가 개선: 기타 2종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 집노기)
 - 수리료 신설: 다리의지 1종 (벨크로 교환)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및 개선 요청내역(〔붙임 1〕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절 재활보조기구>

구분	세 구분	현행 기준	개선 의견	개선 사유
3. 기타	- 휠체어	○ 타-32-4 수·전동휠체어 - 바퀴분리형 3,934,000원	○ 타-32-4 수·전동휠체어 - 바퀴분리형 3,934,000원	- 부품 업그레이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 기타	○ 타-37-6 집노기 (고무제-역류방지형) 57,000원	○ 타-37-6 집노기 (고무제-역류방지형) 00원	- 부속품 없는 집노기(고무제-역류방지형)만으로 사용 불가능함.
4. 수리료	- 다리의지	<신설>	○ 타-59-14 벨크로 교환 28,920원	- 의지·보조기에 사용되는 벨크로는 수리료가 없음.

○ 산재보험 직무지원 시범 재활수가 산정기준 개선

- 수가 신설: 하지의지 1종 (맞춤형 의족 - 특수형)

※ 직무지원 보조기구 신설 요청내역(〔붙임 1〕 참조)

<직무지원 보조기구 시범 재활수가 >

구분	현행 기준	개선 의견	개선 사유
하지의지	<신설>	○ 맞춤형 의족 - 특수형 00원	- 직무 특성상 보행이 많아 장기간 사용시 내구성이 필요한 특수 맞춤형 의족에 대한 수가가 없음.

IV 기타 협의 사항

○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전문 검토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절손상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삭제 2007.3.6>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10.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삭제 2018.12.27.>

마. <삭제 2016.12.30.>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1.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삭제 2018.12.27.>

나. 수·전동 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6.12.30.>

라.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 한국산업표준 KS P 0234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마.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12.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13. <삭제 2014.3.31.>

14.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15. <삭제 2016.12.30.>

16. 요양이 종결 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 고기능형 인공발 지급기준 개선

- 다리 의지 타-14-1(넓적다리 의지 가-1, 나-1), 타-15 (넓적다리 의지 가-1, 나-1) 고기능형 인공발 삭제
- 넓적다리 의지와 별개로 하퇴 의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 신설

○ 직무지원 시범 수리수가 신설

- 현재 직무지원 시범 수가 관련 수리료는 요양급여 수리수와 준용으로 되어 있으나 금액 차이로 적용 가능성이 희박함
- 고가의 직무지원 시범 수가 품목에 맞는 수리수가 신설이 필요함

○ 병원에서 정책부와 요양부에 전달했던 협의 사항

가. 요양급여 개선 방향

- 훈련시 활용하는 임시 의지 수가 마련
- 수리 및 재처방 관리 프로세스 정비 (수리 청구 양식 개선)
- 상지의 경우 미관형, 기계식기능형, 근전전동식기능형, 특수목적 용 중 2가지 제공
- 고기능 족부금액 반영하여, 하퇴의지 및 대퇴의지 수가 조정
- 의지 수가 산정 기준 마련, 부품 코드화 및 등록제 추진

나. 소속병원 요양급여 운영 (공단내부 협의체 구성)

- 의료사업본부 정책부
- 재활의학연구센터
- 요양부 소속병원 요양급여 담당자
- 재활공학연구소 담당자

다음을 포괄하는 산재 시범 보조기구 서비스 개선안 검토

- 아급성기 집중재활치료시 필요한 보조기구
- 사회복귀 지원 보조기구
- 직무지원 보조기구
- 소속병원 요양급여 예비품목 지정

ex) 공학연구소 개발 보조기구 : K-leg 등 재활보조기구, VR 등 사회심리재활시 활용할 디지털재활훈련장비